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도 참고 자료		
보도	2017. 11. 9.(목) 조간	배포	2017. 11. 7.(화)
담당부서	보험감독국	진태국 국장(3145-7460), 양진태 팀장(3145-7471)	

제목 : 금융꿀팁 200선 - ⑦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
 - 매주 1~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- 동시에 2016.9.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일흔한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 정보 6가지”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

<별첨> 금융꿀팁 200선 - ⑦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

금융감독원은 「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‘금융관행 개혁 포털’ (<http://better-change.fss.or.kr>) 내 ‘국민 참여방’으로 제보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금융꿀팁 200선 - ⑦

제 목	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
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사례1) A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.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었음 ■ (사례2) B는 암수술을 받고,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하게 됨.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,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했음 ■ (사례3) C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짐. 배우자 D는 C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, 보험금 청구권자(수익자)인 C만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 난감하였음
꿀 팁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 보험금 청구에 관해 알아두면 유익한 꿀팁 6가지】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10px; background-color: #f9f9f9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❶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❷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❸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❹ 치매,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❺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❻ 보험금 수령시,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</div>

꿀 팁

①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

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·퇴원확인서 등 **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,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***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

* 서류발급비용 : 입퇴원확인서 1~2천원 일반진단서 1~2만원 상해진단서 5~20만원

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, 보험회사들은 **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**에 대해서는 **온라인, 모바일앱, FAX** 등을 통해 사본으로 **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** 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**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**

※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**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**에 대해서는 증빙서류(일반진단서 등)의 **진위여부 확인**을 위해 보험회사에 **방문하거나,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습니다.**

<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 >

-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: 입·퇴원확인서, 일반진단서, 상해진단서 등
- 사본제출 인정기준 :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
- 제출방법 : 온라인, 모바일앱, 우편, 팩스 등

②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

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(빚)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. 이 경우 상속인들은 **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, 한정승인, 상속포기**를 선택하게 됩니다.

이 때,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피상속인의 **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** 대부분의 상속인은 ‘사망보험금’도 **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,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**

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“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**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,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(2004.7.9. 선고 2003다29463 판결)**”고 판시한바 있습니다.

즉, ‘**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**’은 **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**이기 때문에 **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보험수익자가 ‘법정상속인’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.**

꿀 팁

다만, **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(상대방)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,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(일실수입)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(고인)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<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 >

- . **상속포기** :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음
 - . **한정승인** :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,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이 남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음
- * 상속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률구조공단(☞132) 등에 문의

③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

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,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, **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**

꿀 팁

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, 집에 **화재**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,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**거액의 치료비**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**화재복구비용**이나 **치료비**를 본인이 우선 **부담해야**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**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** 보험회사들은 “**보험금 가지급제도**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보험금 가지급제도란,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**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% 범위에서 먼저 지급**하는 제도입니다.

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, 화재보험,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약관에 따라 **가지급금 지급기준**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**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(예시) >

- . **자동차보험** : ① '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'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, ②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
- . **보증보험** : ①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, 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④ 치매,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

최근 **기대수명***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**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함**에 따라 치매보장보험, 고령자전용보험 등 **다양한 상품**이 출시되고 있습니다.

*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

꿀 팁

보장성보험은 **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 계약상품**인데, 계약자가 **치매나 혼수상태 등**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“**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**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,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**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** 보험계약자가 미리 “**대리청구인**”을 지정하는 것으로, **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**

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**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**,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**청구서,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**

다만, 일부 **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**

< 생명보험의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(예시) >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보험계약자
대리청구인 지정(변경)시 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(회사양식) 및 신분증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기본증명서 등)
대리청구인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
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청구서(회사양식) 및 신분증사고증명서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
*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나 보험수익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음	

꿀 팁

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

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**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** 있습니다.

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거나, 보험이 만기가 되어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**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'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도'를 운영하고** 있습니다.

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**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** 지정계좌로 **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**등록할 수 있습니다.** 다만,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,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**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**

< 등록신청 접수경로별 보험금 지급계좌 제출서류(예시) >

- . 지점 방문 : 신분증, 통장
- . 콜 센 터 : 녹취를 통해 지급계좌 등록
- . 우 편 : 계좌등록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인감증명서, 통장사본 등

* **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이체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에 한해 등록 가능**

⑥ 보험금 수령시,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

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,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**한꺼번에 지급(일시지급)하거나, 나누어서 지급(분할지급)하기도 합니다.**

이 경우 보험상품의 **약관에 따라**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,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**가장이 사망한 경우** 유족이 **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**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**한꺼번에** 받을 수도 있고, **후유장애로** 인해 **직장을 잃은 경우**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**나누어서**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

꿀 팁

- 일시지급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할 경우: 분할지급되는 **보험금에 대해 일정 이율^{*}을 가산하여 지급**
-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: **보험금에서 일정 이율^{*}을 할인하여 지급**

* 평균공시이율(17년 현재 3.0%)을 연단위 복리(複利)로 계산

다만, 동 제도는 **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·상해 보험**에서 운영되고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**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